

의안번호	
의 퇴 인	정을호의원
회 답 일	2026. 1. 21.
추계번호	26B0104
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67조(녹색생활 운동 지원·홍보 및 기후환경교육 지원)	정부는 국민의 생산·소비·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(이하 “녹색생활”이라 한다)과 「교육기본법」 제22조의2에 따른 기후환경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·기업 및 민간단체 등과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며, 교육·홍보를 강화하는 등 범국민적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야 함(제1항) 정부는 모든 국민이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후환경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, 녹색생활 실천이 모든 세대에 걸쳐 확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함(제5항) 1. 교과용 도서를 포함한 교재 개발, 교원 연수, 교육과정 개발, 학습환경 확충 및 개선 등 학교교육 강화 2. 일반 교양교육, 직업교육, 기초평생교육 과정 등과 통합·연계한 교육 강화 3. 기후환경교육,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련된 전문인력의 육성과 지원	의무규정

II. 미첨부 등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67조(녹색생활 운동 지원·홍보 및 기후환경교육 지원)	·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□ 개정안¹⁾은 정부가 「교육기본법」 제22조의2²⁾에 따른 기후환경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, 모든 국민이 기후환경교육을 받을 수

1) 동 개정안은 정을호의원이 추계의뢰한 「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추계번호 제26C0061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,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

2) 「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추계번호 제26C0061호) 제22조의2(기후환경교육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고, 지속가능한 사회의 시민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후환경교육에 관한 시책을 수립·실시하여야 한다.

있도록 하며, 이를 위해 교육과정 개발, 학습환경 확충 및 개선 등을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으로,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기후환경교육 지원과 관련한 기존 사업의 확대 또는 신규사업의 추진에 따른 국가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
-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현행법 제67조제5항³⁾에 따라 「환경교육강화」 사업을 통해 ‘기후환경교육 지원’, ‘유아기후환경교육관 확대’ 및 ‘기후위기 재난대응교육 강화’를 수행 중으로, 해당 사업의 2026년 예산은 42억 7,600만원임

[표 1] 개정안 관련 현행 사업 현황

(단위: 백만원)

세부사업	내역사업	주요내용	2026 예산
환경교육강화 (1535-309)	기후환경교육지원	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미래세대에게 탄소중립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, 행동하는 환경소양을 갖추도록 기후환경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, 교사 등의 환경교육 지도 역량 강화 추진	826
	유아기후환경교육관 확대	습관 형성의 결정적 시기인 유아들의 기후환경 소양 함양 및 탄소중립 실천 행동 습관화 유도를 위해 유아기후환경교육관 설치·운영	900
	기후위기 재난대응교육 강화	심화되고 있는 산불, 홍수 등 기후위기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환경교육과 연계한 지역 맞춤형 통합적 대응교육에 국비 지원	2,550

자료: 기후에너지환경부

- 다만,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향후 시행될 기후환경교육 지원 시책 및 관련 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나, 현시점에서는 개정안에 따라 확대 또는 신규 추진될 사업의 내용 및 규모 등을 알 수 없으므로 합리적인 추계가 곤란함

3) 제67조(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·홍보) ⑤ 정부는 녹색생활 실천이 모든 세대에 걸쳐 확대될 수 있도록 교과용 도서를 포함한 교재 개발 및 교원 연수 등 학교교육을 강화하고, 일반 교양교육, 직업교육, 기초평생교육 과정 등과 통합·연계한 교육을 강화하여야 하며,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련된 전문인력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.

Ⅲ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장우윤	김신애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장우윤	02-6788-3735	jangwy93@assembly.go.kr